

‘예술인 권리’를 둘러싼 형식과 실질간의 오작동

정윤희(문화연구자,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1. ‘성평등전주’ 폐미니즘 예술제 전시 퇴출 사건을 둘러싼 치명적인 모순들

작년 7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가 주최한 <제3회 폐미니즘 예술제>의 미술작가 퇴출은 생각이 다른 예술인들을 향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침해, 인권침해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명확성에 비해 예술계와 지역 시민사회는 무관심하거나, 사건의 공론화에 침묵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을 예술계 일각에서는 미술계의 일이니 미술계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응하고, 행사를 주관한 ‘전북여성예술인연대’가 우리의 동료이니 문제를 밝히지 않기를 바라고, 지역 예술인이 익명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인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뒤로하고 ‘성노동’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초점을 옮겨 폐미니즘 진영 내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발제에서는 필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예술 검열 사건을 공동 대응하면서 마주한 사회적 반응의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시키고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 해결의 경로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예술인 통치 기술과 예술인 권리보장 입법불비의 불가분 관계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와 지원제도는 예술인의 예술적 자유 보호와 삶의 조건을 구성한다. 한국의 예술지원 제도는 보조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을 소위 독립적 지위의 자영업자 신분으로 개별화했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문화도시 및 각종 지역의 문화복지,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한 공공 프로젝트는 예술인을 창업자, 소상공인의 직업으로 구체화하여 용역 계약을 맺기도 한다. 예술인복지법은 프리랜서, 각종 임시직의 형식으로나마 예술인을 직업인으로서 선택적 수용을 취한다. 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에게 예술적 자유를 보장하며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명목을 담고 있다. 21년 8월 30일 예술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 권리 등 바탕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침해 사실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고 문체부는 23년 1월 26일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제정 이후 6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업무재해에 대한 보호, 불공정 계약, 성희롱 성폭력 대응 등 예술인 권리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 5월, 5·18 거리미술전 광주시 후원명칭 취소 사건 ▲7월, '성노동'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술작가를 퇴출한 '성평등 전주' 검열사건 ▲8월,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금정굴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9월, 부마민주항쟁문화재단-행안부 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10월, 윤석열 차 검열 사건 등이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예술 검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대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일관되게 '검열이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침묵으로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소극적인 법해석의 차원에서 검열 기관이 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면 입법의 불비(不備)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과 수정,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문체부의 몫이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윤석열 차 검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풍자예술을 빗대어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은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고 심지어 권리침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체부가 예술검열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해보면 검열 행위의 주체가 공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나, 예술인이 활동과 생존이 외나무 다리에서 침묵으로 벼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며 관료 기술로 분할 통치를 해오던 터라 당연한 것은 아닐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기표화 하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가르겠다는 기의가 바로 '입법불비'가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 전주' 예술검열 사건은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번째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의 공정성과 신뢰, 책임의

모호성이며, 두 번째는 공공과 갈등 협력하며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 환경과 당사자의 인식과 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예술인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하고 ‘예술인 보호관’의 조사 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 책임이 신기루처럼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리보장위원회가 무엇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의결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수 없고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한 실행체계가 어떻게 보완되고,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의 예술인권리보장 시스템과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는 로드맵 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아는 현장 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권리 침해의 해결 방안은 소송을 하거나 권익위나 인권위에 신고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전주〉 예술 검열 사건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가해기관이 예술전문 지원기관이 아니고, ‘성평등 전주’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성평등 전주’ 사업은 공간만 유지될 뿐 정지된 것으로 보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어도 가해자와 함께 활동한 주체가 심의자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불신은 어둠의 장막으로부터 점점 두터워진다.

3. 예술인 권리보장의 비틀어진 내적구조 ‘문화예술생태계’

미완일지라도 예술인 권리 보장 관련 제도는 헌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 등 형식성을 갖추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생태계가 내포하는 문제가 권리 침해를 촉발하는 원인이며 행위자임을 간과할 수 없다.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질은 문화예술생태계의 먹이사슬로 뒤틀어진 내적 구조를 혁신했을 때야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평등 전주’ 예술검열 사건에 대한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불편함과 침묵으로 표출되는 반응을 적시할 수밖에 없다.

예술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장르, 성별, 세대 각각 장벽을 세우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선정과 탈락의 저울에서 위태롭게 서야 한다. (그림1은) 정부가 산하기관, 위탁기관, 공공 유사조직의 포식자 사슬구조로 초래되는 문제와 대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1. 문화예술생태계 시스템 분석>¹⁾



신자유주의 정부에서는 예술계를 분할 통치로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분할 통치는 일종의 사회운동 세력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왔는데 90년대 이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걸고 선택적 수용을 하면서 결혼 이주여성은 가부장에 기반한 동화주의 전략에 때로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노동자 남성의 인권과 노동권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다. 장애인, 성소수자 운동을 배제시키는 갈라치기 전략을 연상해보면 예술인권리보장 제도화 과정에서 문체부는 이 갈라치기 전략을 잘 활용한다. 예술인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공정과 성평등에 주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검열문제는 지워버리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로 시점을 옮기면, 개인과 세력을 분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예술인/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유사 공조직 포함)은 예술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수직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일상화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술/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배제

1) 예술생태계 권리 분배 진단과 제언 (정윤희, 2019)

를 당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끈기 있는 문제 제기가 없다면 ‘우리는 별문제 없어’가 없고 침묵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과연 지역에는 블랙리스트와 미투가 없었을까? 없으니 상관없는 일인가?

* 전주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작가가 보내온 입장문 일부

돌이켜보면 이번 폐미니즘 예술제에서의 작가 배제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성평등전주에서는 참여하던 작가가 제작 중이던 작품을 철거해야 했던 일도 있었고, 작품 발표 전에 검열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작품의 방향에 적절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등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폐미니즘’의 ‘탈’을 쓰고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결탁하여 절대 사라지지 않을 듯한 세력이 있으니, 괜히 밟보였다간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예술가로 낙인찍히고 더 나아가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지역 내에서 고립될 것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폐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입맛에 맞게 예술을 주무르는 일에 침묵했습니다.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점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어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며 폐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예컨대 리빙랩, 포럼, 예술제 등을 진행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성평등전주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적당히 맘에 드는 이들이 자원의 흐름과 예술 작업의 방향을 결정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익명의 지역 작가 입장문에서 정치세력과 결탁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내의 포식자 ‘성평등 전주’가 초래해온 문제 ①반복되어온 예술 검열과 배제 ②폐미니즘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사유화 ③자원 통제와 권한 ④사회혁신 거버넌스의 미명하의 특정 조직의 이니셔티브 독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주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가 겪는 고질적인 문제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공통의 과제가 되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만드는 구조 또한 관료의 통치 기술일 것이다.

4. 실질과 형식의 오류 : 시민운동 ≠ 사회혁신의 공식

〈성평등전주 예술검열〉 사건과 관련한 문제와 담론에서 발견되는 사회혁신 공조직의 윤리적 형식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 주체가 갖는 내적 구조의 모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은 일종의 사회적 재난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호명하고 ‘다른 사회’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이다. 〈성평등전주 예술검열〉 사건의 시사점은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기된 사회혁신 거버넌

스가 소위 자가당착과 같은 형식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모순이 우연인지 내재화된 것인지 밝혀 보자는 것이다.

사회혁신의 개념과 시민운동의 거버넌스 조직에서 개념과 내적 원리는 상충 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비판과 도전을 통하여 정책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한다면 사회혁신은 다양성을 기반하여 협업관계를 통해 공동생산하며 혁신하는 지향점을 갖는다. 사회혁신의 관계 감각은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다. ‘성평등 전주’라는 전주시와 행안부가 출연한 위탁 기관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성평등 전주’가 22년 10월 7일에 발표한 사과문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확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의 인식만 확인할 뿐이며 2차 가해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 사과문 일부 발췌

2014년부터 선미촌의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과정에서 지역예술가들과 선미촌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과 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표현의 자유와 인권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반인권적 통념을 지속하고 선미촌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수한 여론 및 움직임들과 싸워왔습니다. 선미촌에 자리잡고 있는 성평등 전주는 이러한 싸움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선미촌은 완전 폐업되었고 성매매업소였던 공간이 성평등, 예술, 생태를 주제로 하는 거점 공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과 예술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간의 선미촌의 변화 노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²⁾

공조직에서 공공의 재원으로 주최한<성평등전주 폐미니즘예술제>에서 공식적 공모 절차를 통해 적법한 기준으로 작가를 선정했다면 그에 응당한 기관의 책임은 상식적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성평등 전주’가 사과문에서 ‘성매매의 다른 입장을 가진 예술가’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라면 공모당시 지원 조건에 담아 공식화하고 공지하는 정차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정 이후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견해가 다른 작가들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성평등 전주’의 형식과 실질의 간극을 기관의 미션과 피해예술인의

2) <http://www.jsic.or.kr/main/inner.php?sMenu=main>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2.10.07

입장문에서 발췌한 언표들을 대비해 보았다.

윤리적 형식 (미션)	피해 예술인의 입장문 발췌한 언표들
적극적 다양성 :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받는 차별받는 대상이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발굴 지원	‘반성매매 운동의 가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 제 작업 내용이나 방향과는 관련 없는 말들/ 입장이나 사상을 검증/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
연결과 협력 :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소통 시도와 문제제기/ 차단/ “반성매매 운동과의 입장 차이/ “같이 전시할 수 없다”
시민주도성 : 시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운 경험을 지원	‘사과문으로 충분하다.’/ ‘사과할 일이 아님/ 작가님 이야기 듣지 않아도 안다”

사건의 가해 당사자인 조선희 센터장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사과문에 일부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시민 운동가로서의 입지와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성평등 전주’를 총괄하면서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통해 선미촌 공간 7개소를 청년·여성·문화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가게를 설립하고 선미촌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포부를 키우면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리빙랩, 성평등 활동 지원사업, 공간 지원사업등 각종 공적자원의 권한은 지역의 예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낄 만큼 지역 시민사회에서의 그의 강한 영향력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성평등 시민운동가로서의 자부심이 공적 자원과 만났을 때 평생에 걸쳐 자신이 추구해온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를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페미니즘예술제 주관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해명 (치명타 작가 입장문에서 발췌)

주관단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성노동 담론에 대해 무지하고 공부를 안 해서 지금까지 ‘성평등전주’가 말하는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더 공부를 해보겠다며 전시를 같이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페미니즘 예술제를 주관한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해명과 지역예술인의 입장문에서 확인하듯 ‘성평등 전주’가 행정에 대한 주체적 인식 없이 특정 세력에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통제해온 것은 아닐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제시되는 사회혁신 거버넌스 운영

공간‘성평등 전주’가 시민사회의 운동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도 시민사회와 시민을 제대상화 하는 수단으로서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체택한 결과가 남기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 절차를 규정한 법의 실질적 요소들이 정작 권리침해 사건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성평등전주 예술검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면 어땠을까?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공동의 해결과제로 협의할 수 있다면 예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과 예술적 자유의 권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